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9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5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7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3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3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004)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8)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88)

상정된 안건

- | | |
|-------------------------------------------------------------------------|---|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 2 |
|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 2 |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52) | 2 |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70) | 2 |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32) | 2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30)	2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004)	2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8)	2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88)	3

(11시16분 개의)

○소위원장 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사일정 제1항·제2항의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별도의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1시17분)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방통위 설치법 관련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 요지 관련해서 16페이지까지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16페이지 현재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안 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19페이지의 논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관련해서 진술인들의 논의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28쪽의 조문대비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김현 의원안이고 또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제시한 안이 김현 의원안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체계를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목적과 운영원칙 조항의 일부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로 김현 의원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위원회 명칭과 구조 등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7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사항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인사청문 대상인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 내용을 보면 심사해야 될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요지를 보시면 부칙 4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 관련해서 이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보다는 제정을 통해서 조직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OTT 관련 업무는 이번에는 배제하고 또 기구 명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는 게 현실적이다, 상임위원 숫자는 7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 자격기준 중에서 법조인 기준은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진흥 측면의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부처의 콘텐츠 관련 기능을 독임제 부처로 일원화하고 규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통신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도 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통상 문제 소지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관련해서 OTT는 추후 논의하고 통신 소관은 현행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없는 내용 중심으로 제정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 그리고 유료방송까지 소관을 확대하게 되면 상임위원을 조금 늘려서 7인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료방송사업을 이관할 때 전광판하고 음악은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방심위의 경우에는 위원장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쪽, 공청회 내용 보시겠습니다.

고민수 진술인은 전문성 있는 판단하고 공공성·시장성 균형을 위해서 합의제 기구가 필요하고, 사무 조정하니까 위원 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명일 진술인은 민간기구로 정무직공무원으로 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유튜브나 동영상을 심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OTT가 빠지고 유료방송 이관만 논의되면 일부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칙 제4조는 처분적 입법으로 부당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동주 진술인은 미디어 분야의 양면성 등을 감안해서 합의제 위원회가 적합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우 진술인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등이 있었습니다.

신미희 진술인은 방심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하거나 중립지대에 추천 권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인호 진술인은 현행 법률에 3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위원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고, 부칙을 통한 해임은 규제기관 독립성 차원에서 헌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공청회 진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진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뤄야 될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문별로 논의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 수석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소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안, 최민희 의원안과 김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논의를 모아 온 안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전제로 제가 민주당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28쪽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잠시만요. 회의를 좀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안건은 심사자료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의안번호 2211765 이것을 민주당에서 새로 냈습니까, 여기 개정안을? 아니면 뭘 갖고 논의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 지난번에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이 심사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지난번에 방송 3법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처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도 회의 진행의 원만함을 위해서 협조를……

○**신성범 위원** 아니, 설명을 알아듣게끔 수석님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도 여기 심사자료는 최민희 의원안과……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러니까 제 안을 토대로 해서……

○**신성범 위원** 민주당안을 마련했다는데……

○**소위원장 김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이게 제정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난 회의 때 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민주당안을 제출했고 오늘 그 안을 토대로, 최민희 위원장님 안과 김현 의원안과 민주당안 3개의 안이 있는데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민주당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자료는 다 이 안에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 최민희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소위를 한 차례 할 때 그때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오늘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김현 의원님 안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였다가 민주당안은 또 방송미디어……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시청각을, 지금 OTT 문제를 문제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 제정에는 OTT 부분을 빼는 것으로 제가 철회를 한 거지요.

○**신성범 위원** 그러면 이른바 민주당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를 이미 끝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차피 김현 의원안을 골격으로 하고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한 민주당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 심사자료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좀……

○**신성범 위원** 우리 간사님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헷갈리잖아.

○**최형두 위원** 예, 간사가 정리할게요.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 원래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추천하고 여기에 따라서 서로 표결해 주기로 했는데 당시에 여당에서 이것을 당론은 아니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만들어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새로 바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회가 대의기구임에 따라서 주권자가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그러면 국회가 의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한 구조를 기본적

으로 파괴한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우리도 위원회 체제를 지금 새롭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모든 상임위 활동이 전체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참했다고 하시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알려 드려야, 속기록에 남겨 놓아야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안으로 올라왔는데 국회의 법안 심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개의 안이 올라와서 그 2개의 안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거지요, 그때 수석전문위원이?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위 논의 과정에서 통합안이 만들어진 셈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통합안은 이렇게 소위 과정에서 바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에 다시 소위에서 통합안을 논의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여러 안을, 각각 상정된 여러 개의 안을 소위에서 통합해서 대안으로 바로 논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소위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몰라도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대안이 전체회의의 의결로……

○최형두 위원 제 이야기는 원래 당초에 이게……

○소위원장 김현 인공지능법 제정도 여러 개의 법이 있었어요. 그때 각각의 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과방위안으로 해서 여야 합의안으로 올라갔어요. 디지털법도 그랬고요.

○최형두 위원 그래요? 절차상,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또 하나, 지난번에 보면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도 여러 법안이 있었는데 어느 법안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상정이 안 된 채 함께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선별 이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것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소위원회 회부 여부는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그게 소위 직접 회부의 대상 법안인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의—달리 볼 수는 있습니다만—권한 자체는 위원장의 권한이시기 때문에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김현 소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전체 미디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벌써 방통위 체제가 들어선 지도 10여 년이 지났고 최근의 케데현 사태를 보면서 그게 우리 민족의 아주 큰 즐거움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빼먹어 가는 그런 비극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런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또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가 이야기했던 안 자체가 한꺼번에 논의되지 않고 그 논의는 배제된 채 그냥 오늘 중에 이것 의결할 생각이십니까, 혹시?

○소위원장 김현 정부가 지난 일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역대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을 때 여대야소의 경우에서는 야당의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인수위 때 내 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통상 승리한 쪽에 대한 패배한 쪽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여소야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쟁점이 돼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시작조차도 못 하고 인수위가 없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잘 복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통과시켜 줬고요, 이명박 인수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 이전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의 논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서 협조를 했지요. 지금 인수위가 없는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그 발표한 내용 중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권했던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고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발의한 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말고의 문제는 민주당에서 판단 내리는 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 언급하셔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제정법을 낸 것은 한편으로—이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저희의 공약사항입니다. 이 공약사항은 국민의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를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 및 법제의 통합 개선을 하겠다’고 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를 마련한다’, 이게 공약사항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OTT와 방송을 아울러 고려하는 방송미디어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정비를 하겠다’고, 이미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했지만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법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없는 거고요. 저희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안에 대해서 이전에, 최민희 위원장님은 대선 전에 법안을 발의한 거고 저는 대선 후에 법안을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 내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반영해서 협의하고 토론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현 위원장 입장도 반영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사실은 변화된 미디어통신 환경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아까 김현 위원장께서 ‘여당 내부의 논의를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 여당 내에서 잘 이견을 조율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것이 여당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 한겨레신문의 지난 9월 3일 자 21면을 보더라도…… 저희 뿐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방통위 개편 입법이 속도에 매몰되어서 내실을 놓칠까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당, 부처 간 대립 분야 미루더라도 오는 25일 까지 추석 전 마무리 예고’, ‘김 위원장님 안, 여당 간사 발의안 통합하되 문체부 등 이견 드러낸 OTT는 빼기로’, ‘통합기구 요구해 온 학계·언론단체 정책목표·업무 재설계 부실 우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여당 내부의 논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거론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학계, 특히 방송 학계에서도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던 다른 법안에 대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도 이견이 맞물려 있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 상정된 이 대안만 가지고서 표결까지 마치실 게 아니라 좀 더 숙고를 해 보자, 여러 방송계와 산업계 또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좀 더 통합적인 법안을 만들자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정현 위원** 이정현입니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김현 의원님 안과 최민희 의원님 안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이콧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돼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형두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소위를 조금 연기하자라든지 가타부타 말씀이 있으셨을 필요가 있겠다……

○**최형두 위원** 했었어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예정돼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김현 의원님 안, 최민희 의원님 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두 안을 통합한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오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논의하면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 위원장님께 민주당 통합안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김장겸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김장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지난번에 김현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을 가지고 정부 부처에 의견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OTT를 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OTT 뺀 것에 대해서 문체부의 입장만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부처의 입장, 그러니까 민주당안이라면 통합된 안, 예를 들어서 갑자기 9명에서 5명으로 했다가 위원 수를 7명으로 줄이고 또 뭘 빼고 넣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 수렴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혹시?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소위원장 김현 그것은 제가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부 쪽 입장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김장겸 위원 아니……

○소위원장 김현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신성범 위원 여기 뭘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른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현 정부의 입장을 묻는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

○신성범 위원 아니, 좀 들어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소위원장 김현 수석전문위원이 그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요.

○신성범 위원 아니아니, 정부 측에 물어보면……

○소위원장 김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 제가 수석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냐고 물어봤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장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저는 정부 측에 물어본 게 아니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절차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답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저희들은 당연히, 예를 들면 최민희 의원안, 김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회하는 과정은 당연히 거칩니다. 당연히 거치고 그것을 담아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심사자료로 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각각의 입법기관인 위원들이 논의한 내용들을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 심사했다는 전제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심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이 또 의견을 다시 제출하고 교환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 자료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 진행하시지요. 민주당 통합안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 민주당 통합안에 대해서 논의 시작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28쪽 보시겠습니다.

입법형식·법률명입니다. 이것은 뒤에 29쪽의 목적·운영원칙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따가 목적 조항과 운영원칙 조항들을 아주 추상적이고 또 법률의 특성상 일반 추상적인 개념들을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보여서 이 법률의 제명을 지난 법안소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자고 제안된 바가 있어서 또 민주당안으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법안의 제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쪽까지 같이 할까요?

○소위원장 김현 예.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게 묶여져 있는 거라서요.

목적 및 운영원칙을 보시면 김현 의원안은 현행법의 목적이라든지 운영원칙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변화된 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미디어를 방송미디어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조항과 운영원칙 조항은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입법취지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 방송 분야 정책 일관성 등을 감안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추상적인, 입법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뒤 페이지 30쪽을 보시면, 민주당안 2조 4항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과기부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법안소위나 또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통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부쳐 의견이라든가 그것을 존중해 주고 손대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통신 부분은 조금 빼고 방송미디어로 국한하자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무슨 소리예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방송미디어 분야로, 지금 통신 분야를 빼고 말입니다.

○최형두 위원 방송미디어로 국한하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목적 조항과 원칙 조항, 특히 2조 4항 부분에 대해서, 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발언권 주세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죽 보고받고 한꺼번에 논의를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여기까지 하시고, 제명과 원칙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어쨌든 정부의 입장이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일단은 죽 가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뒤로 계속이요?

○소위원장 김현 예,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까지요?

○소위원장 김현 예, 다 하세요.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의 말씀이 통신 부분……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니까 논의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보고하고 정부 측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진행하시자는 얘기……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제명하고 원칙 조항과 목적 조항을 지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논리구조상 이것을 먼저……

○소위원장 김현 아니아니, 다 하고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 하고요?

○소위원장 김현 예,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최형두 위원 원래 이게 각각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축조심사하는 것?

○소위원장 김현 아니, 하기 나름이잖아요.

○최형두 위원 더구나 여기 공부를 해야지……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각각 하자는 것 아니야, 우리는……

○최형두 위원 각각 하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각각 하시는 게……

○소위원장 김현 그래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최형두 위원 각각 합시다. 왜냐하면 자꾸 타이밍 놓치고 나중에 말이……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정부의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2차관입니다.

지금 제2조 민주당안을 기준으로 제4항의 수정된 문안을 보시면 원래 관련된 조항은 심사자료 30쪽 제일 왼쪽의 현행 2조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안 제4항에 보시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난번 소위와 그제 정부·여당이 함께 발표한 조직개편상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 분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통신 분야의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진흥 업무가 추가가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현행 2조의 문안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선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영해서 문안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휘 위원 저 발언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김현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잠깐만, 정부 측 얘기가 지금, 여기 2조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민주당안 제2조제4항과 관련된 것인데요.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기존의 안이 뭡니까? 방통위 설치법 기존의 안이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기존의 안은 2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항입니다. 30쪽의 제일 왼쪽 2항에는……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행하는데……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이대로 유지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비고란에…… 비고란 위원님들이 같이 보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거기 비고란 박스에 보시면 저희 수정의견으로,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리고 방송미디어는 공정 경쟁환경 조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함께, 방송 분야는 산업 생태계까지 추가하시는 것으로 이 수정의견으로 하면 그 취지가 반영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휘 위원 이제 이야기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김현 예.

○이상휘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거라서, 통상적으로 방통위는 규제 쪽이고 과

기부는 진홍 쪽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통신과 관련해서는 사전 규제와 정책 기능은 과기정통부에 있고요. 사후 규제, 금지 조항과 관련된 그런 사후 규제는 방통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통위는 지금 얘기할 게 없나요? 방통위 얘기를 들어 봐야, 안 하고 제가 건너뛰었어요. 죄송합니다.

방통위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본적으로는 방통위에 방송 진홍 기능이 오기 때문에 현행 2조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유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방송의 진홍과 관련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민주당안에 동의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방통위 의견을 못 들어서요.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내가 보니까. 맞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소위원장 김현** 이상휘 위원님, 의견 얘기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의견 얘기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정부 쪽을 보면—우리가 일을 했을 때도 그렇고—역할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과기부는 진홍 쪽이고 방통위는 규제 쪽이다. 일종의 감시·감독기관에 조정도 하지만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 조항을 보면 모호합니다, 내가 봐도. 2조 4항을 보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규제와 진홍 정책을 통째로 준 거거든. 그러면 이게 쉽게 말로 표현하자면 빼킹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 누구한테 묻는 건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빼킹 나는 거지요?’ 하고 두 사람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이상휘 위원** 저하고 눈 마주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빼킹이라는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소위원장 김현** 빼킹 빼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2차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조직개편의 취지와 정부 발표의 취지에 맞게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홍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안 4

항에 따르면 통신의 진홍 기능까지, 이게 표현상 중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 쪽은 현행대로 공정경쟁과 관련 걸로 앞부분에다가 하고 방송미디어와 관련된 건 공정한 경쟁환경 및 산업 진홍 기능과 함께 후단으로 이렇게 연결을……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 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부처가 각기 역할이 있는데 진홍과 규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어떤 관례라면 관례라 그럴까—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혼돈이 되는 법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역할을 명확하게 가져 가야 된다……

○소위원장 김현 이상휘 위원님, 반복적이니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왜 나만 보고 그래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상휘 위원 오래간만에 나도 좀 이야기하려 그랬더니……

○소위원장 김현 늦게까지 해도 돼요. 길게 해도 되니까요.

노종면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부족한 것 있으면 더 해 주십시오.

지금 과기부 의견이 뭔지 얼핏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신을 완전히 덜어 내면 IPTV 같은 경우가 방송미디어로 통칭되는 것인지 통칭이 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보기에 따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통신을 빼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내신 수정의견을 가지고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봤어요.

지금 민주당안에서 4항이 의미하는 것이 통신 고유의 어떤 산업 생태계의 혁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명확한데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통신과 융합된 방송미디어를 전제한다면 과기부 입장이 수용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똑같이 방통위도 제가 지금 수정 제안하는 방식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의견 들어 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부터 먼저 하시지요,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실 이것은 운영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실제 뒤에 보면 방통위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기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의 어떤 그러한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받아 주신다면 저는 노종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류제명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도 노종면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그런 안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장겸 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종면 위원 과기정통부 수정의견 박스 쳐진 것 네 번째 줄의 중간 부분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혁신적'으로 이어지잖아요. 혁신적 앞에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방송통신 분야라고 하니까 통신 전체 분야로 오인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 단말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 지금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2조 4항, 그거지요?

○노종면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30페이지의 박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원래 법안의 취지가……

김영관 처장, 소위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법안의 취지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방송 분야든 통신 분야든. 그런데 지금 앞에서 거론되는 운영원칙 2조 4항을 보면 노종면 위원이 달리 표현을 냈지만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에서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뒤로 가서 위원회의 설치 조항인 3조 보면 위원회 소관사무 규정에는 위원회가 수행할 업무로 '통신에 관한 규제' 이렇게 돼 있어요, 통신에 관한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뭐 김현 의원안, 민주당안 동일한 것 같은데 '통신에 관한 규제,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앞에 대안도 나왔지만 좌우지간 통신의 진흥과 규제 모두인지 통신의 규제만 해당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확실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출속으로 재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진흥과 규제 통합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하여간 저는 이 법안 조항 앞 뒤만 가지고도 헷갈리거든요.

○노종면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소위원장 김현 예, 노종면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김장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명 좀 듣고 말씀하시지요.

○노종면 위원 마이크도 일부러 안 켜신 것 같아 가지고……

○김장겸 위원 마이크 잘못…… 먼저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가 먼저 좀 말씀……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방통위가 얘기해야지, 이게 방통위 설치법입니다. 과기부는 방통위 설치법의 한 분야입니다. 너무 개입하지 마십시오.

○김장겸 위원 제가 김영관 처장한테……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가 얘기하십시오. 진흥과 규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통신과 관련해서는 과기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 분장에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방송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과기부가 담당했던 규

제와 진홍 업무를 방통위로 모두 이관해서 향후에는 방통위가 방송의 진홍과 규제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지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난번에 야당 위원들이 주로 얘기한 게 이름 바꾸고 숫자 늘리는 정도의 바뀐 게 없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있는 것을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변화는 굉장히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착안하여 가지고 방통위는 본연의, 예전에 2008년도에 만들어질 때 당시의 방통위로 돌아가는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출속적으로 했던, 과기부도 본인들이 담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과행적으로 간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이 몽땅 방통위로 오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님이 아까부터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해민 위원 통신의 원래 업무 분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구의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자구가 돼야 될 텐데, 정부 측 양쪽의 의견을 듣다가 지금 과기정통부의 현재 구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방송 진홍에 관한, 이제 방통위로 이관이 될 방송진홍정책관의 역할과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역할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통신 정책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다음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등 해서 양쪽에서 통신을 우리가 이렇게 입법취지를 하지만 실질적인 일을 할 때 통신 관련되어서 만약에 이 앞에서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기정통부의 수정의견을, 저는 그게 더 깔끔 하기는 한데 노중면 위원님의 제안 또한 조금 더 좁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서 거기에 정부 측에서 다 동의를 하시면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최형두 위원 제가 할게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최형두 위원 이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인데……

○소위원장 김현 아니, 핵심적인데 지금 과기정통부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위는 원안 동의이고, 수정안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이 찬성하고 나머지 여당 위원님들은 이견이 없는 걸로 보고 거기서 최형두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정안이 필요한 것이냐,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는 불가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되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분리되고 정부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방송, 통신 이런 명칭에 보면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FCC잖아요. 페더럴 커뮤니케이션즈 커미션(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관장하냐면 전파, 라디오, TV, 새틀라이트(satellite) 모든 걸 다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전파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 전파를 이용해서 통화를 하고 또 부가가치를 만드는 정보통신. 이게 똑같은 것이니까 쉬운 건데 이걸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해 놓으니까 방송의 영역, 통신의 영역 이렇게 자꾸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혼선이 생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제일 비슷한 형식인 기능통합형이니까, 형식이 이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나 아니면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인데도 방송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은 아예 그냥 방송통신도 빠지고 총무성이라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행자부 기능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계속 우리 당이 하는 이야기인데 일부 명칭 변경으로 제정법안을 만들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근본적으로 정부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다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됐다가 외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정부 체제…… 또 내용도 보면 크게 어느 부처와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본질적으로 미디어 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중면 위원의 수정안이 특별히 이견이 없고 지금 다른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32쪽 보시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이게 김현 의원안이 시청각미디어 형태로 했었습니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지난 번 소위 때 맞춰졌고요.

그다음에 3조 2항을 보시면 거기서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대상에서 다른 심사 업무나 소관 업무는 제외를 하는데 통신규제 기본계획은 그래도 총리가 좀 관여하라 이런 취지로 해 놨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처음에는 통신해킹 관련은 그래도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등등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총리 감독 사항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수정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쪽 아래 위원회의 구성 관련 보시겠습니다.

구성 관련해서 지난번 소위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정도 제안됐었는데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이렇게 3명이고 비상임위원은 4명입니다.

34쪽 아래, 위원 임명입니다.

임명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1호에 법률학 전공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굳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관련해서 여기에 관해서 민주당안은 삭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학 포함되고 밑에 보면 ‘상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쪽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안의 2항을 보시면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인은 1항에 따른 임

명을 하는데, 38쪽 보시면 2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서 3인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서 4 대 3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8쪽 하단 보시면, 위원장의 임기라든가 그다음에 신분보장 등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9조(겸직금지 등)도 다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먼저 민주당안 제3조 2항 1호에, 지금 현행법에서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님 안과 민주당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도 총리 관할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 김현** 3조 2항 1호 얘기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3조 2항 1호입니다.

○**김장겸 위원** 몇 페이지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33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지금 방통위 의견이고,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해킹 관련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해킹 관련입니다.

지금 통신 해킹 관련 정책 33쪽, 1호의 내용은 당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통신 해킹 관련된 정책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취지로 이게 제안이 된 건데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좀 잘못 드렸는데 여기 총리 지휘 감독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면 오히려 방통위 업무로 명확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저희가 별도로 통신 해킹과 관련된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통신 해킹 관련된 내용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기준대로 두자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의견이 같은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소위에서 최민희 의원안 9명, 김현 의원안 5명 이렇게 했다가 7명으로 합의 봤는데, 내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근거도 없이 방통위원 출속 중원해 가지고 정치적 나눠 먹기밖에 안 된다. 왜 7인이어야 되는지 납득 할 만한 이유가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김영관 처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7인으로 늘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은 사실은 입

법 목적상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지금 진흥과 규제를 통합해 가지고 뭔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것 방통위가 찬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김장겸 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7명으로 늘면 업무 진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5인보다 훨씬 자체가 되고 하는 일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 부분은 결국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도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에도 세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위원장한테 위임하도록 하는 그런 의결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김장겸 위원 아니,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방통위가 제출한 그 안을 보면 통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성 그리고 이런 게 떨어지게끔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서 진흥과 규제는 합쳐 놓고 그러면 방통위의 기본 입장하고 달라진 것 아니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본래 방통위가 원하던 그런 취지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본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방송의 진흥과 규제 업무가 통합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고요.

○김장겸 위원 미디어 환경 지금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환경 좋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됐다면 OTT가 소관사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11조에서 보겠지만 지금 김현 위원장께서는 이것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했는데 민주당안 오늘 제출한 것만 봐도 방통위 기존 14개 소관사무에 네 가지 정도 추가했고 심의 대상 29개에서 32개로 단 3개 늘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획기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애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지.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 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소관사무조차 그리고 운영원칙 이런 데 대해서 이게 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건데 다른 것을 지금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한번 답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로서는 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그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 사무처로서는 지금 현재 의견을 낼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방통위의 의견은 지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내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한테도 7명이 왜 7명인지 이것 노종면 위원님이

한번 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는 건데 이해민 위원님이 앞서 발언 신청했으니까 이해민 위원 발언 듣고 또 노종면 위원 답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고민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7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을 생각해 봤는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근간에는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획기적인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위원 수 확대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답을 주실 것 같고 저도 듣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저는 방송 3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 선출직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측면에서 38페이지에요, 특히 최민희 의원님 안처럼 비교섭단체의 몫을 다시 살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국회 스스로 정당성과 다양성이라는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일단 숫자가 왜 7이어야 하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의 발전, 그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형태의 출현과 또 혁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업무가 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적·양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데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 안대로 9명까지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7명이 맞는지 더 늘려서 11명이 맞는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늘리되 정무직 숫자를 조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선택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임위원 5명에 비상임위원 둘을 늘리거나 상임위원 둘을 더 추가하는 방식은……

저는 일단 상임위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정무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에서 볼 때 가급적이면 피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직을 담당하는 위원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이게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에서 볼 때 숫자는 늘려서 늘어난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데 정무직을 오히려 좀 줄이고 전체 총원은 늘리는 그러한 설계를 해야겠

다라는 판단을 했을 뿐인 겁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이게 왜 정답이냐고 하면 그때는 할 말은 없어요. 9명도 충분히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을 셋으로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넷으로 두는 방안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해서 제안했던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제가 좀 더 부언을 하면 5명이었던 게 3 대 4, 상임이 3이고 비상임이 4고요. 뒤에 가서 논의하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무직공무원화 되고 상임 하나가 되고 2인이 상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인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사실은 장관급 위원장이 지금 둘에다가 차관급 상임위원이 6명이었던 거지요. 6명이었던 것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면서 사실은 차관급 상임이 하나 줄고 비상임 둘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방통위원회만 보면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는데 방통위가 상임으로 5명 하고 또 상임을 1명 늘리는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소속기구는 방통위가 유일합니다. 권익위나 인권위나 다국무총리 산하로 돼 있고 소위 상근하는 차관급·장관급이 제일 많은 데가 방통위예요. 지금도 5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통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심위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포지션이 좀 옮겨 오면서 늘리는 것을 조정하면서 상임과 비상임 숫자를 조정했다라는 거고……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는 안 늘어났다 이런 말씀……

○**소위원장 김현** 하나가 늘어나는 거지요.

○**김장겸 위원** 하나밖에 안 늘어났다?

○**소위원장 김현** 예, 전체 규모에서 하나 늘어요.

○**김장겸 위원**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제정안도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현** 합의제 기구지요.

○**김장겸 위원**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상임 3, 비상임 4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하고 비상임하고의, 비상임은 표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

○**소위원장 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 의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상임이 3명이고 비상임이 6명인데 통신 분쟁을 하니 디지털……

○**김장겸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하고 하는 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이게 합의제 기구로서의 입법취지에 맞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김현** 방송위원회도 9명이 상임이었고……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송위원회 예까지, 그러면 이것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상임과 비상임의 역할을 조정하는 거지요. 심의 의결 권한을 상임이 하는 것과 비상임이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건 세부적으로 방통위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해 주면.

○이훈기 위원 지금 상임이 3명이고 비상임이 4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임만 5명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방송위원회를 보면 그때 상임 5명, 비상임이 4명이었는데 상임과 비상임의 업무 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집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총 7명으로 하면 그냥 상임을 5명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비상임 2명 하고. 왜 그러냐하면 비상임 하는 분들이 자기 업무가 있고 가끔 와서 하는데 그 사안 사안, 의결사항에 집중하거나 전문성을 갖기에 제가 보기엔 상임하고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과거의 방통위 사례를 봐도.

그래서 저는 차관급의 상임을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5명이었으니까 5명으로 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비상임을 2명으로 하는—9명까지 늘리기는 힘드니까—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통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5명, 2명 했을 때 방통위 구조도 감안…… 방통위의 현행 인원, 지금 35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00명 규모예요, 방통위가. 여기서 상임 다섯에 비상임 두 명으로 갈 경우에 방통위 업무가 매우 가중된다는 점이 반영됐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 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겸토자료도 있지만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거든요.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통합형 이것이 미국 그리고 일본이고. 그다음에 기능분리형,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이냐 하면 사실은 기능통합형인데 독임 부처 두 군데가 이거를 일부씩 뜯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가져오려 그랬더니 또 약간 반발이 있어서 미뤄 놓고 어정쩡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아마 일부 제출된 법안 중에 보면 이거를 독임으로 하고 차라리 유럽식으로 정책 진흥은 독임으로 하고 규제는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부처 간 분산된 사무를 통합하는 것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인데 독임제 부처가 미디어 산업 영역 대부분을 통합 관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예컨대 지금 과기정통부 또 문체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걸 미디어라는 것으로 한꺼번에 끓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있겠지요.

아니면 미디어 관련 사무를 통합하되 위원회 조직의 사무를 확대하여 진흥과 규제 업무를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봉합된 형태로 가고 있는데, 한편에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독임제 부처의 의사결정이 신속성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을 테고. 또 효율성만큼 위원회 조직이 다수 위원의 전문성과 협의를 통한 신중한 심의와 의결도 또 중요한데 이거는 속도 문제가 생길 테고.

그래서 독임제 부처가 공공미디어를 제외한 미디어 거버넌스를 전담하는 안은 시의적·

효율적 정책 집행과 미래지향적 대응이 가능하고…… 저는 이게 케데현 사태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너무 길어요.

입법조사처에 누가 의뢰한 건지 밝혀 주세요.

○최형두 위원 또 위원회 조직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사무를 담당하는 안은 미디어산업에 특화된 정책 수립과 독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소위원장 김현 누가 의뢰한 거예요? 입법조사처에 누가 의뢰했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숫자와 함께 이런 큰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 문제가 이번에 법제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 않았다 이 점을 질의드리는 거고.

또 하나, 숫자 문제입니다. 이것 5인이나 7인이나? 5인으로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미국 FCC도. 왜냐하면 적당한 5인 합의제라는 것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펜타곤이지요. 다섯 개의, 세 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지혜를 모으기 좋고 신속성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5인이든 7인이든 문제는 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공전했던 이유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인호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국회가 의결했으면 몇 개월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무슨 강제조항을 두는 법안, 지난번에 우리가 5인 체제가 2인 체제로 되었던 문제가 그런 건데 정부가 당시에 뚜렷한 이유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7개월을 자연스럽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든지 그것도 아닌 채 그냥 7개월을 둉개서 한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지금 체제도 그렇고 또 개편된 7인 체제도 국회가 4명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위원회의 사례에 보았듯이 여당이, 다수당이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당론으로 만들어서 부결시켜 버리면 사실은 이게 앞으로 4인 체제로 갑니다, 뭐 5인 체제나.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34페이지에 보면 2000년부터 2008년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2008년 논의되다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 5인 체제로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가지고 상임과 비상임 또는 전체가 상임위원, 이거는 정답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정무직공직자 방침위에 1명을 두기로 한 것 아닙니까? 방침위 자체가 전임 정권 때 너무 과행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 여러 가지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 숫자가 결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은 운영의 문제, 어느 누가 숫자를 정해 놓더라도 정상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정권의 가치, 집권당의 목표,

뭐라 그럴까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정권 때 너무 과행적이고 이상하게 운영된 것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둔다면 저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방송 분야에 대해서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로 신설할 위원회가 업무 자체를 많이 넓히고 있고 그게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안으로 올라온 안들 보면, 그런 측면에 좀 접근한다면 저는 이해 못 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봐요.

○소위원장 김현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어요. 상임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것도 있지만 2개가 지금 외부 인사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7개가 상임위원들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분쟁조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인데 이 부분이 비상임위원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이 현재는 부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 전문적인 비상임위원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을 맡게 되면 훨씬 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역할, 예를 들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나 아니면 방송평가위원장의 경우도, 제가 세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방송평가위원장은 내부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임위원이 방송평가위원장은 맡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 상임위원의 논의와 비상임위원의 논의가 차별되는 거는 아닌데 다만 심의 의결의 안건과 그리고 상임위원 숫자가 어쨌든 보면 정치권의 배려 뜻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회 추천 뜻을 3인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기도 해서 비상임위원을 늘리고 상임위원을 조정하면서 정치적 후견주의도 약화시키고 국민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대통령 뜻 하나도 줄여서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고, 그렇게 된다는 점으로 7인 구조로 얘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저는 7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추천하는 부분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이해민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한다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이해민 위원이 제안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이어 가도 좋을 것 같습니

다.

○**소위원장 김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기존의 상임위원 5명 체제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상임위원을 줄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 기구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까지 정치적 후견주의를 얘기한다는 것에, 저는 맥락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선출된 권력이 책임을 지고 구성 을 하는데 합의제 기구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추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임명되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장관들은 다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안에 한 가지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교섭단체가 둘임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이 방안은 교섭단체가 셋 이상일 때 가능합니까, 이 규정 적용해서 정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구성……

○**소위원장 김현**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하나가 나누어지는 거지요. 그거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 1 포함해서 3인을 추천하는데 그 외 교섭단체가 복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정현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노종면 위원** 복수일 경우에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합의해서……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가든 상임으로 가든 의석수가……

○**노종면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다당 체제가 의회민주주의를 훨씬 다이내믹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 의석수가 있는 쪽이 상임위원이 되고 의석수가 없는 쪽이, 적은 쪽이 비상임……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당이 2인을 추천하고 그 외 야당이 3인을 추천 한다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아니,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2명을 지명하고.

○**소위원장 김현** 그다음에 여야가 하나 하나 하고요.

○**한민수 위원** 비상임으로 가서……

○**소위원장 김현** 비상임으로 가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둘둘, 의석 비율대로 가는 거지요.

○**이정현 위원** 의석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교섭단체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비교섭단체도 3명의 봇이 있을 때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참여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어서……

○최형두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 다수당이 교섭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것을 해야지요. 이거를 갑자기……

그러면 지난 21대 국회 때도 선거법 개정할 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 현실을 감안해서 득표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무조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등 정당이 되었는데, 상당한 의석을 얻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선거제도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섭단체는 지금 20명이라는 숫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는 보면 ‘The winner takes it all’, 1인 1선거구제 방식이 돼 가지고 득표율과 많이 괴리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이해민 위원이 우리 소위고 해서 이해민 위원 얘기를 존중하고 싶은데 지금 비교교섭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비교교섭단체 중에 숫자가 많으면……

○소위원장 김현 지지율로 할 것이냐 뭐 이 얘기…… 오케이, 알았습니다.

○최형두 위원 복잡해요. 복잡해서 비교교섭단체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더……

○김장겸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현 의견이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7명 중의 5명이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거는 내가 속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이인호 교수가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는데 국회가 인사권을 나눠 가지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찾았어요. 제5조와 관련된 건데 이게 2009년에 있었던 2009추53 판결인데 제주도의회 조례에 관한 건데 이게 제주도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중 일부를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때 있었는데 이것은 임명 강제, 이런 적극적·사전적 개입은 위법으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인호 교수님의 위헌성 지적하고 판례가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인사권을 빼앗는 것이다,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것을 국회와 대통령 관계에 아마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임명하라는 규정은 헌법 위반 가능성성이 있다 그런 판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얘기하세요.

○노종면 위원 여기 2항에 보면 ‘위원 7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라고 돼 있고……

○소위원장 김현 예, 비상임위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비상임이 1인이고…… 그러면 상임·비상임 나누어 보면, 이 문구를 해석하면 상임 3인은 대통령 1 그다음에 여야 교섭단체가 1,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상임은 넷 중에서 대통령 1, 여당 하나, 그다음에 비교섭 야당이 둘. 이게 맞는 거예요, 정리된 게?

○소위원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대통령이 2명 하는 게 맞네요?

○소위원장 김현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3 대 2……

○노종면 위원 4 대 3이 되는……

○최형두 위원 3대 2가 4대 3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 맞습니다.

○이해민 위원 최형두 위원님이 제 얘기를 해서 그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다들 비교섭단체를 안 해 보셔서 모르시나 싶은데 우선 비교섭단체의 뜻은 국회에서 정할 때 그 안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정해지게 돼 있어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것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독립성과 공정성 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언급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최형두 위원 여당이 빨리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서 조국혁신당을 넣어 주세요.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양보한다고 하세요.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도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45쪽 위원회의 소관사무입니다.

여기 11조는 소관사무고 12조는 심의·의결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유료방송정책만 방통위로 이관하고 김현 의원안은 유료방송이나 뉴미디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다 가기로 했다가 지난 소위에서 제안한 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제외하고 유료방송만 과기부 소관사무로 이관하는 걸로 했습니다.

46쪽 보시겠습니다.

통신 관련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다만 이용자 보호 업무 중에, 2호에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인데요. 여기도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통신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또 당연히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의견을 달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와 관련해서는 최민희 의원안대로, 2호 관련해서는 통신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하고 중복 소지가 있으니까 현행대로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계속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12조 관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의 사항 관련해서 47페이지 우측 하단을 보시면, 12조 관련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음악·전광판은 제외하자고 했었는데 만약 그걸 제외하는 걸로 되면 9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50쪽의 민주당안 15호에 보시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현재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49쪽 보시겠습니다.

현행법 12조 10호부터 12호까지는 방송사업자나 광고판매대행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조사·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심사 사항에 새로 신설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이걸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48쪽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안의 24호·25호·27호·29호 관련해서 과기부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49쪽 보시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심의위원 관련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아닙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방통위의 심의·의결 사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49쪽 보시면, 27호에서 광고 이런 것이 방송통신광고로 돼 있는데 방송광고로 특정하고 29호 관련해서도……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앞에 있었던 통신이 빠진 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자고 했던…… 통신을 다 빼자는 얘기네요, 과기부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과기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앞에만 빠진 게 아니라 뒤까지 다 빼자는 것 아니에요. 통신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논의된 것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부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리고 29호는 부가통신서비스 관련인데요. 여기도 조정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13호로 충분히 포섭이 되고 시정요구도 12호나 20호에서 포섭이 되고 이용자 보호는 15호에 규정돼 있어서 중복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아래의 수정의견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과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과기부의 입장이 언제 온 겁니까, 수석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어제 정도에……

○소위원장 김현 지난번 회의 때랑 전혀 다른 얘기가 온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지난번 회의 때는 민주당안이 나오기 전이었기……

○소위원장 김현 통신을 다 빼자는 얘기가 오늘 들어온 건데…… 오늘 오전에 들어온 거라고요? 몇 시에 가져온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걸 빼자고 한다기보다도요, 규정상 통신 분야 소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저희가 이걸 다 이미 토론해서 정리한 건데 정리하기 전 걸 지금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과기부가. 이게 언제 온 거냐고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월요일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월요일경에 왔는데 저희 위원장실과 간사실에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몇 시에 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월요일 점심경에 왔다고……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지요, 전혀 새로운 의견이 온 건데.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저희는 부처의 의견은 당연히 민주당하고……

○**소위원장 김현** 지난번 1차 소위 때 얘기한 거랑 부처의 의견을 왜 저희한테 안 알려줘요, 여당에게? 지금 저희가 야당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차 소위 때는 통신 부분은 현행 부처 의견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소위원장 김현** 이 얘기가 없었잖아요. 전혀 새로운 의견이 어제께 오후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신 거지요, 과기부 의견이?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저희는 1차 소위 때 통신 부분은 부처 의견을 존중하자는 얘기로 통신을 제외하자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리 일관적으로 놓고 보면 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으로, 방통위 설치법은 방송으로 이렇게 일원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저희 민주당안이 통신이 빠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기부 의견이 왔으면 저희한테 전달이 됐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저희……

○**소위원장 김현** 정부의 의견이 왔는데, 전혀 다른 의견이 왔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단순히……

○**최형두 위원** 아니, 과기부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걸 안 줍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장님, 저희들은 소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따로 민주당에 보고하는 것은 제가 조금……

○**소위원장 김현** 아니, 소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민주당에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이 회의 준비를 하려면 정부의 입장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율을 한 안이 아닌 전혀 생경한 게 특 던져져서, 조율하지 않은 전 단계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알겠습니다. 방통위 입장 얘기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소위 위원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수석전문위원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소위원장 김현** 제가 이미 지적했으니까, 방통위 의견 얘기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이 부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가 충

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과기부 쪽 의견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통신 분야와 관련돼서 저희 의견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수정의견이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이것 다 빼자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

통신 분야는 지금 현재 방통위에 있는 걸 저희가 가져오겠다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현재 방통위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분장을 지난번 소위에서 그렇게 존중하기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일부 해석상 정리해 주신 취지를 넘어서서 방통위로 더 업무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컨대 51쪽을 예로만 들겠습니다.

51쪽 22호·23호에 보시면, 민주당안은 24호·25호로 돼 있는데요. 현행 23호가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런데 여기에서 ‘규제’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통신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방통위와 저희가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중복의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분장에서 저희가 방통위에서 가져오겠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23호를 ‘통신 규제와 방송 관련’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거나 ‘방송의 진흥 및 규제 그리고 통신의 규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의 규제와 관련돼서 저희는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뜻입니다.

23호·24호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아예 ‘2조 4항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항’ 이러면 되는 거네요? 아까 앞서서 정리했던, 그러니까 통신을 방송하고 연관된 것까지 온전히 다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통신과 미디어 관련된 것은 당연히 방통위에서 진흥, 규제 다 하는 거고요. 통신과 관련된 규제 방통위에서 다 하는 거고. 이 전제는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오해의 소지 있는 것들을 문구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통신의 규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 규제와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사후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게 법의 대전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아까 애초에 2조 4항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다면 이것도 추가로 좀 더 다듬어야 될 여지가 있는지 보겠지만 그걸 그냥 준용해서 그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와 관련된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문구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통신을 그냥 다 빼겠다고 하면…… 이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과기부 입장에서 오해가 생길 것을 고민하셨으면 뺐을 때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셨어야지요, 정부 부처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규제만 그 단어를, 지금 통신을 빼겠다는 게 아니고……

○**노종면 위원** 아, 그냥 기준대로 해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방송은 방송 규제만 하라는 거잖아요, 2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래서 앞부분을 ‘방송의 진흥 및 규제’ 그걸 추가하시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방송의 진흥 및 규제, 통신 규제’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걸 여기 어디, 문구 제안을 다 해 주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문안은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문안은 저희가 이렇게 제안해서……

○**노종면 위원** ‘방송·통신 규제’ 하면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방송통신규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방송은 둘 다고 통신은 규제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해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 간의 그런 업무 중복이나 그런 게 해소가 되려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맡겨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현** 예, 넘어갑시다.

○**한민수 위원** 앞에 다 있으니까 세부 조정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테크니컬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저는 42페이지 결격사유 조항, 이게 기준에 있던 법을 아마 그대로 가져온 거지요? 김영관 처장,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지난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사무를 새로운 법에 확대를 하자고 한다면 관련 사업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이 소관사무에 정해진 대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앞에 설명한 대로 음악유선방송사업, 이것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들어가기로 한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 예,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전광판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것을 추가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은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간 게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극단적으로 김어준이 방통위원장, 방송미디어위원장이 될 수도 있

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와 관련된 것 심의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상호 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속 입법으로 보이는데……

○소위원장 김현 출속 입법이라기보다는 미디어 단어가 지금 빠진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2항에?

○김장겸 위원 출속 입법이지. 전광판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음악유선방송 이런 것은 좀 숙성해 가지고 숙의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현 방송사업자를 다, 어느 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를 한 묶음으로 묶었는데 누락이 된 겁니다, 지난번 제 안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장겸 위원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45쪽 비고란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 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음악유선방송 또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이관 대상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방통위로 이관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맞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 소관사무 1호와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유료방송정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OTT를 제외하기로 하신 취지에 맞게 유료방송정책에 한해서 하고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은 또 문체부랑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유료방송……

○소위원장 김현 아니, 이 뉴미디어정책은 IP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준용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유료방송에 IPTV·홈쇼핑·중계유선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으로 포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 알겠고요.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지요, 정부 측 의견?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장님, 잠깐 말씀……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마지막에 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안에서 수정해서 최민희 의원님 안으로 바꾸자고 하셨는데 방통위의 입장은 지금 민주당안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발표한 내용과 조금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민주당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 번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현 뉴미디어라는 건 언제든지 뉴미디어가 있는 겁니다. OTT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고요. IPTV 때문에 뉴미디어정책국이 생긴 거고요, OTT 때문에 뉴미디어정책국이 생긴 게 아니고요. 디지털방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에 있는 디지털

정책도 하고 문체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방통위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교육부·방통위·과기부가 다 관장했던 업무예요.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홈쇼핑은 어디서 관할하게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홈쇼핑은 방통위로 이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 유료방송정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데 OTT를 제외하자는 취지에 좀 지금 논의에서 한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현 아니, OTT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대로 이것이 OTT를 관장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OTT도 관장하고 있어요. 콘텐츠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미디어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청각 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방통위의 본연의 임무,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이용자의 권리 증진하는 방통위 역할 중에 50%가 차지하는 겁니다, 방통위 역할이. 규제가 아니고 진흥도 아니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규제입니까, 진흥입니까? 왜 자꾸 그렇게 떼어 놓아서 생각하려고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동의하는데 이번 취지에 좀…… 다음 논의에 하시기로 했던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유료방송……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을 내더라도 민주당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을 많이 뺏고 있어요.

○김장겸 위원 보니까 OTT를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과기부·방통위 의견이 첨예한데 문체부하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차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충돌이나 첨예한 의견 충돌을 한번 거르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소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할 수 있던데 정부 부처들……

○소위원장 김현 저희 했는데요?

○김장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정부 부처들 모아 가지고, 관련 부처들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시지요.

다 했으니까 진행하시라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29호는 그대로 가는 걸로……

자료 55쪽 보시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는 회의소집요구 2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한다든가 의사정족수 관련 최민희 의원안, 김현 의원안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안은 4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수 있고 의사정족수는 4인,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지금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4인 이상 또는 위원장 단독 이렇게 소집 요건이 강화되고 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현행법 체계에서 2인 체제가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국회의원 지금 현재에서도 3인 추천을 하고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봇을 또 임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사실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이렇게 꼭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이제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는데 과연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면 이 개정 법안의 통과와는 별개로 현행법에 따른 위원 추천 의무를—이걸 법으로 할 게 아니라—이행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7인에서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과반으로 의결정족수 하는 건 정말 합리적으로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5인에서 2명으로 뚝딱뚝딱 다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안 취지에 맞는 의결정족수와 출석 인원이라고 봅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의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4인에서는 어쨌든 상임·비상임의 업무 비중이라든가 업무 파악이 다를 텐데 7인에서 예컨대 상임위원이 2인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의결정족수는 똑같습니까,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소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 3인인데 3인이 안 오고 어떻게 의결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임위원은 1명 오고 비상임이 3명 오는 경우도 있지 않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무너져서 문제인 거지요. 이 규칙이 2인으로 해 가지고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의사결정을 한 적이 윤석열 정부 빼고는 없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을 위해서 남겨 두겠습니다.

후세가 보면 선후를 분명히 좀 따져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리는 데,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지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제처장이 빨리 결론을 안 내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문형배 소장대행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그러면 국회는 그로부터 1년여는 왜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소위원장 김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시지요.

○**최형두 위원**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현** 협조해 주십시오. 1시 반까지는 회의를 끝내는……

○**최형두 위원** 아니, 이것 분명히 기록을 남기려고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무슨 윤석열이 안 해 가지고 5인 체제가 안 된 거라는데 국회가 3명을 임명 안 한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 2명을 해 봐야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끝이에요. 3 대 0이 됐어요.

○**최형두 위원** 이번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임명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몽땅 안 해 줘 버리면 우리는 추천해야 허사던데……

○**소위원장 김현** 추천 잘하시면 돼요.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야가……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최형두 위원** 소관이 아니라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 소위도 과행됐다 이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최형두 간사님, 원내대표 되시면 그 문제 잘 해결하시고요.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64쪽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바뀌는데요.

김현 의원안과 민주당안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또 19조를 신설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19조에 보시면 결격사유에 공무원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은 방심위원이 안 되는데 상충 문제가 있거나 또 공청회에서도 약간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방심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자의 재량으로서 도입을 한다 그러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선례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할 때 방송법을 개정해서 다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를 타법 개정 형식으로 한 선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입법을 할 때는 타법 개정의 형식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입법자의 선의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직무 부분 가시면, 70쪽 보면 지난 법안소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제외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소위원장 김현 이 부분은 방심위는 의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는데요.

아까 52쪽의 29호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과 관련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9호에 보시면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쟁조정과 시정요구,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민주당안에 저희 분장 정리해 주신 취지에 100% 동의하는데요. 시정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함께 하시지요,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 부분은 제외한다는 표현만 좀 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현 아니, 같이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해 주시면 현재 저희 규정하고도 맞고 방통위에서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외시켜 달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괜히 열고 과기정통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과기부에서 하는 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장겸 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요.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노종면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최형두 위원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데 자세하게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한민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토론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토론한 건 뭐니까?

○최형두 위원 내가 하나하나 낱낱이 그 문제점을 다 밝힌 거예요. 총괄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한민수 위원 지금까지 토론했는데……

○소위원장 김현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노종면 위원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관련해서 1호가 공무원은 안 된다인데 위원장을 정무직공무원화하면 충돌된다 이 지적이었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충돌의 가능성 뭐 예를 들면……

○노종면 위원 그러면 1호에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건 아주 정무적이고 입법정책적인 판단인데요. 공청회에 오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방심위 출범 자체를 민간으로 하자는 얘기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 민간은 아니에요, 방심위가. 국가기관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맞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는 데기 때문에 사실 국가기관성이 강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방심위원장만큼은 정무직으로 해도 소위 말하는 자율성·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법적 충돌 부분이 어디라고 아까 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은, 방심위원장도 위원인데 공무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무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 그래서 1호를 ‘단,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지적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위헌의……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게 두면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명확해 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을 보면 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관련 규정들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두면 그 법과 상치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아닌 얘기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정하면……

○최형두 위원 아니 이왕 할 때, 나야 반대하겠지만 좀 엄밀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지금 방심위원장을 국가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열 논란을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사후 검열은 검열이 아니다’라고 어느 분이 답변했는데 그런데 사후 검열도 소위 우리 헌법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후 검열이 표현물 삭제까지 나갈 때는 표현의 자유하고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헌법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검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이라고 그럴까 이런 독립 민간기구로 창설이 됐는데,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방심위를 행정청으로 보는 그런 판결을 종종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립 의도와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행정성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탄핵까지 한다면 사실 권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방심위 직원의 60% 이상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MBC·KBS의 다수 구성원이 언론노조 소속인데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한 방송심의가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꼭 굳이 통과시키겠다면 이해충돌 회피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 조항 이거를 신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심위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나요? 누가 나왔나요?

○소위원장 김현 방심위 나오기는 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방심위 기조실장입니다.

저희 현재 업무의 기준 규칙으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다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부처에 있기는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예, 저희 내부에 마련된 규칙에……

○소위원장 김현 복무규칙이지요?

○김장겸 위원 아, 내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예, 그리고 위원뿐만 아니라……

○김장겸 위원 기왕 법을 제정법으로 하니까 그런 걸 아예 법 속에, 법 조항에 넣자는 거지요, 제 말씀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런데 위원님, 정무직이 되면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장겸 위원 아니, 내 말은 직원들, 지금 직원들……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직원들도 비밀준수 의무가 지금 설치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설치법에 돼 있는데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IP 주소 가지고 다 내부 자료를 가지고 주고……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돼서 수사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법 조항으로 넣자라는 의견을……

○소위원장 김현 법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김장겸 위원 법 조항이 있어요?

○소위원장 김현 예, 26조.

○최형두 위원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소위원장 김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6조(사무처) 심의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총장 1인과 뭐 있고요. 그다음에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1항에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대로 들어갑니까?

○소위원장 김현 당연히 그대로 살려 있지요, 27조.

그렇게 된 거로……

○노종면 위원 아까 냈던 의견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9조 1항의 1호하고……

○소위원장 김현 몇 쪽이요?

○**노종면 위원** 67페이지입니다. 제19조 1항의 1호, 공무원이 안 된다는데 공무원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조를 ‘심의위원 추천 대상자의 결격사유’로 수정을 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라고 하면 추천할 때는 공무원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해서 위촉이 된 상황에서 위원장인 경우에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안대로 가도 되는데 다만 판단은……

○**노종면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요 모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런데 위원님, 결격사유는 직접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위원의 자격에 직접 법률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입법 형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단서에 아까처럼……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그대로 가시지요.

○**노종면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게 이 정신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정무직공무원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직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직은 제외한다라고, 지금 법관·판사처럼 거기에 포함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

○**최형두 위원** 그래서 천천히 제정하시면 돼요, 법적 논의도 하면서. 급하게 하니까……

○**노종면 위원** 아니,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왜 방해하세요?

○**소위원장 김현** 방해하지 마시고, 의사진행을……

○**최형두 위원**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요.

간사께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 정리를 좀 하고 발언하시도록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으로 하는 것보다 결격사유를 두되 법관, 교육공무원도 예를 들면 헌법상의 되게 독립적인 중립적 영역에 있는 분이라서 여기에 예외적으로 추천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그러면 저는 정무직을 여기에 넣더라도 그게 해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방식으로.

○**노종면 위원**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만 추천하게 하는데 그분을 위원장이 된 다음에 정무직공무원화하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은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여기서 위원님들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할지 말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여당인데 탄핵소추를 왜 해요?

○**소위원장 김현** 견제하라고요, 국회에서.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탄핵소추 대상으로 하면 야당 입장에서 좋은 거지요. 좋다기보다도 견제 수단이 생기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이건 없습니다.

류희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류희림 때문에.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어느 개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법에, 한번 이게 제정이 되면 몇 년 가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래도 위원님, 탄핵소추는 엄청나게 통제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탄핵의 제도는.

○**소위원장 김현** 다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이것 위원님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관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하나가 좀 빠져 있어 가지고요.

방심위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부칙에 저희 직원들 고용 승계라든가 경비, 규칙 이 부분……

○**소위원장 김현** 들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아직 부칙 얘기는 안 들어갔어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되어 있는데 마지막 8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회에 방송이랑 통신이 한 12만 건 정도가 심의 대기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오시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셔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게 저희 통신이나 방송심의 규정 이 부분 승계 좀 추가로 해서 부칙에 넣어 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은 넘어가시지요.

○**노종면 위원**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그 의견서를?

○**소위원장 김현** 서면으로 들어간 게 반영된 거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지금 방심위 기조실장님이 얘기했는데 부칙 조항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82쪽 설명을 드릴까요?

○**김장겸 위원** 예,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당연히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부칙 조항이나 적용례 등을 넣어야 되는데요. 민주당안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쪽 아래 박스 형태와 같은 부칙이 필요합니다, 타법 개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방금 방심위 기조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과기정통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칙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거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업무 조정한 내용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85쪽 보시면 심의 규정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

문에 이것도 종전 심의 규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붙임 자료를 보시면 타법에서 방심위, 방통위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다 망라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 승계 조항 넣는 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현 들어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다 됐습니다.

○김장겸 위원 부칙에 관해서……

○소위원장 김현 얘기하시지요,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관련 부칙에 지금 정무직공무원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 지금 현행 제7조, 제8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고. 지난번 우리 공청회에서도 나왔듯이 이 부칙은 위헌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 이거는 삼권분립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결국 정무직공무원이 이진숙 위원장 한 명뿐인데 오직 한 명을 대상으로 아주 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을 꼭 부칙에 둬야 되나,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입법부가 입법행위로 해임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반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관련된 법 통과가 되고 그리고 위원장마저 없다면 이 승계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행 방통위원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칙으로서 이렇게, 위헌성이 강한 부칙을 굳이 넣어서 이렇게 아예 정무직공무원이 한 명도 없고. 지금 2인 체제도 아니고 1인 체제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입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수개월간 실제로 위원장 없이 조직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잘 준비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2008년도 그때는요 국회에서 방송특위를 만들어서 굉장히 심의, 숙고하는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며칠 만에 똑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10년 전부터 연구했다고 하지만, 10년 전부터 하신 분도 있지만 저희는 국민들도 그렇고 며칠 만에 이렇게 법안을 보는데 과연 그때 2008년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지……

2008년이든 2013년이든 뭔가 규제와 진영을 바꿀 때는 거기에 대한 관련 업계만 해도, 지금 오늘 이 두 분만 해도 의견이 충돌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러면 이게 확대되면 전부처 또 관련된 업종들 얼마나 문제가 산적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하는 건 맞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좀 전에 방통위 측에서도 설명했지만 과거에도 새로운 위원회나 정부조직이 구성이 되면 정무직 면직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지금 2시간 넘게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왔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다 동의들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금 과도하게 이진숙 위원장 문제를 하게 되면 이상해져 버려요. 이진숙 위원장도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새 정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주권정부 아닙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여러 기구를, 정부조직을 바꾸고 그중의 하나로 새로운 방송미디어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뭐라고, 본인 스스로 지금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어떻게 한다고.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게 정치적 행위예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의 신분은 뭐냐? 고위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청탁금지법으로 수사받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마지막 발언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최형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여야가 숙고를 해서 하자는 것이고 이건 국민의힘 최형두나 또는 김장겸 위원 또는 우리 당 위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겨레신문……

○**소위원장 김현** 아까 읽었잖아요.

○**최형두 위원** 예, 한겨레신문 9월 3일 자를 꼭 읽어 주십시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방통위 사무처장인가요? 2008년이랑 그건 다릅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고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숙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당사자들, 한 107명의 야당 전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위인설관이 아니라 위인폐관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저희들은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군부가 국보위법을 통해서 당시의 국회공무원들, 정무직공무원들을 다 저거 했는데 직선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설립되면서 바로 위헌결정 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을 새롭게 우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적절한 규제환경을 만드는 이런 법을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이걸 추석 전에 서둘러서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언론과 미디어 단체들에서도 걱정이 많다. 또한 저희들은 매우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오탈자 하나만 짧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자료 91페이지 맨 위의 23번, 다른 법률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심

의위원회',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이것만 틀렸네요. 수정하십시오.

○소위원장 김현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꼼꼼히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지요?

○최형두 위원 이의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들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잠깐, 표결 전에 한마디만 합시다.

공청회 우리 소위 차원에서 한 번 더 하자는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지금 아시겠지만 이 법이 마치 30일 됐다, 50일 됐다 얘기하시지만 이 법은 22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방송 4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수도 없이 논의가 됐고요. 방송 3법은 두 번에 걸쳐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공영방송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이제명 정부가 들어서서 방송 3법이 통과가 됐고 공표가 됐습니다. 방송 3법이 공표가 된 이래 방통위가 정상화돼야지만 이 방송 3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 법은 시간을 지체 할수록 공영방송의 신뢰성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라는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 위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합니다. 빨리 방통위원부터 추천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김현 거부하셨습니다.

여기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인으로 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2차관,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속기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장겸 김현 노종면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해민 이훈기 최형두 한민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이재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서정배